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운영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대문구 연세로 구역 내에 신규 설치하는 규격화·디자인 거리가게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세로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가게'란 연세로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판매대로 그 명칭은 스마트 로드샵(Smart Roarshop)으로 칭한다.
2. '도로'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연세로(주변 보도 포함)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도로 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거리가게를 사용·수익·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 점용허가'란 「도로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것을 말한다.

제4조(거리가게의 선정기준) 거리가게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 사항을 적용하여(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정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 주민으로 한다.
2. 재산 소유액 2억 원 이하로 한다.

단, 위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 구청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연세로 기존 거리상인으로 인정된 운영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며 1호는 제8조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조(재산조회) 재산 소유액은 시설물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합산한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 및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으로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재산 소유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 설치) ① 거리가게 판매대 설치는 연세로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판매대의 구매비용은 거리가게 개선정책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부담하며 운영자에게 도로 점용료 외 판매대 대부료를 징수한다.
2. 판매대는 취급품목에 따라 먹거리류, 잡화류(공산품류), 타로 3종으로 하며 규모는 2.5m x 1.7m 로 하고, 구청에서 설치한다.
3. 판매대의 규격·형태·색상·디자인·설치위치 등은 구청장이 정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대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가림막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제7조(거리가게의 판매품목 등) ① 거리가게에서는 액세서리, 잡화, 과일, 음반, 간단한 가열 음식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상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물품
2. 주류
3. 주변상가와 품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품목
4. 그 밖에 구청에서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② 운영자는 도로점용 허가 시에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판매품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점용허가 등) ① 거리가게의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이 규정 시행 전 실태조사 등에 따라 연세로에서 지속적으로 거리가게(노점)를 운영해 왔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2. 생계가 어려운 구민으로 실태조사 및 연세로 상생협의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재산 등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1년마다 기간을 연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가 거리가게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허가 연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도로 점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때
2. 공익목적 등 도로 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행위의 금지)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허가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3. 허가된 품목 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4.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5.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6.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점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판매대는 철거하여야 한다.

1.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하여 영업을 포기 한 때
2.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다만, 운영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가족 중 1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사실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때
4. 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 3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6. 도로점용료, 대부료, 전기료 등 각종 부담금을 체납하여 납부률 2회 이상 독려 받고 계속하여 체납 중일 때

제12조(거리가게의 관리) ① 구청장은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거리가게를 운영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부에 한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점용허가를 승계한 자의 점용 허가기간은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허가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거리가게 임시폐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후승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운영자가 제7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1.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2. 주택임대차 계약서

④ 구청장은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거리가게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 도로점용 증명서를 일반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운영 상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영업한 운영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운영자는 본 규정에서 금지된 행위로 적발되어 사실확인 등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청측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시민의 보행환

경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를 조정하는 등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업지원, 취업알선, 자활지원, 업종 변경 등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리가게 판매대 관리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를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화재 및 운영자(이용자 포함)의 고의·과실로 파·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판매대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운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매대 파손 또는 훼손으로 미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보수 또는 구청에 보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판매대 외부에 어떠한 물건도 진열·적치·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판매대 주변과 외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거나 밀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판매대 외면에는 구청에서 승인되지 아니한 포스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일절 게시할 수 없으며 판매대를 이용한 광고판은 구청에서 공익목적 등으로 활용한다.

7. 판매대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8. 판매대는 점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판매대로 인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0. 판매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공익목적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청장이 운영자에게 행위를 제한하였을 경우 제한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성실히 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30일 이상 장기 폐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자는 영업장소 주변의 불법 거리가게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카드단말기 설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운영자는 판매대에 부과되는 각종 도로접용료, 대부료, 전기료 등 각종 부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11. 주변 상인 및 주민들에게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생 청결유지 등)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대의 위생청결 유지의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조리 음식을 취급하는 운영자는 위생 및 보건검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취급식품은 변질되거나 오물 또는 다른 물질에 따라 오염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기에 안전하여야 한다.
3. 식품 취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식품위생법」상 질병 등으로 음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음식판매대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맨손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생장갑, 집게, 손가락 등의 위생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운영자는 위생모자, 위생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6. 거리가게 영업 개시 전·후 반경 2m이내를 청소, 제설 및 제빙작업을 실시하고, 쓰레기, 폐식용유 등은 수거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처분의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연세로 상생협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연세로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연세로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협의회는 거리가게 문제의 주체로써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구청, 상가 번영회 임원, 지역단체장, 건물주, 상인, 거리상인 등으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구청장에게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구성과 조직은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⑤ 기타 기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실태 파악 및 거리가게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연1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세로의 전 거리가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거리가게 운영자는 조건 불이행자로 구분하여 허가취소, 강제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자 교육) ① 운영자는 시·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등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시·구청 및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2.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3. 그 밖에 거리가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19조(점용료 등 부과·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점용료 : 「서울특별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